

민간경비 활성화와 공경비와의 민간경비 협력증대방안

임명순*

<목 차>

- I. 서론
- II. 치안여건의 변화와 전망
- III. 각국의 민간경비의 실태와 전망
- IV.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증대 방안
- V. 결론 및 제언

<요약>

앞으로 민간경비는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조직으로서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방법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치안공백의 상태를 자위권의 인식과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현대적 경비개념의 적용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범죄예방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경비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공경비와 민간경비분야의 협력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른 국내 치안수요의 변화와 전망 등을 예측하여 보고, 특히 선진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공경비와 민간경비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경찰의 방범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경비의 권한과 지위를 향상시켜 날로 급증하는 치안수요 등의 치안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주제어 : 민간경비, 공경비, 경찰, 협력증대, 경비업 】

* (사)한국경비협회 교육훈련과장, 행정학박사

I. 서 론

현대의 사회생활이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점점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수법이 지능화·신속화·흉포화 되어 가는 범죄문제는 많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심각한 문제이다.

범죄문제는 국가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전개되어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치안유지를 위해서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에서 협력을 하였는데, 법집행과 범죄대응은 경찰이, 범죄 예방은 민간경비가 각각 담당토록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1976년 한국용역경비업법 제정된 이래 8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1999년 3월에 개정된 법률은 1976년부터 근 20여년동안 사용하여오던 '용역경비업법' 명칭을 '경비업법'으로 바꾸어 포괄적 개념의 전문경비제도를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0년대 이후 기계경비시스템이 점차 도입되어 경비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었으며,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과 1993년도 국제행사인 「'93대전엑스포 박람회」 이후 놀랄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1978년 10개에 불과하던 경비업체가 2005년 6월 현재 2,418개에 이를 만큼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내부속사정을 살펴보면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취약성과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민간경비 산업 분야에 있어서 많은 수요가 증가되고 요청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아직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단순 비교를 통해서 볼 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나아가서 공경비와 민간경비간의 밀접한 협력증진 방안에 대한 노력도 시급한 상황이다.

앞으로 민간경비는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조직으로서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방범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치안공백의 상태를 자위권의 인식과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현대적 경비개념의 적용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범죄예방 시스템

을 운영하는 민간경비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경찰과 민간 경비분야의 협력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른 국내 치안수요의 변화와 전망 등을 예측하여 보고 특히 선진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 등을 분석한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증대방안을 통해 경찰의 생활안전·장비·교통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경비와 민간경비간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 민간경비의 권한과 지위와 권한을 향상시켜 날로 급증하는 치안수요 등의 치안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II. 치안여건의 변화와 전망

1. 국내정세

한국의 인구는 현재 4846만 명, 2015년 4904만 명을 정점으로 즐기 시작해 35년 후인 2040년엔 4287만명, 50년 후인 2055년엔 3448만 명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2003년 현재 출산력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약490만 명으로 약10%(2050년이면 약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진국형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으로써 정년연장문제와 노인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여 미국, 일본 등과 같은 노인범죄의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사회구조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 한층 고조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치안수요도 계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알카에다테러집단이 한국을 테러대상국에 포함시키면서 정부는 대테러경계령을 강화하고 있는 지금, 치안서비스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준비와 예방적인 방어태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미국과 일본은 지방자치 제실시에 따른 자치체경찰의 재원확보 한계 때문에 자신의 건물이나 재산은 자신이 부담하여 경비(수익자부담원칙)하는 민간경비제도를 완전히 정착시켜 경찰의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보완하여 왔다. 한국도 기초자치단체가 '자치 경찰대'를 직속기관으로 창설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2007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민간경비가 경찰과 함께 지역치안문제를 전담하게 되고 따라서 전문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 치안여건의 변화

한국 총범죄 발생량 추이를 19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아래 <II-1>에서 나타났듯이 1994년 총범죄발생건수는 1,309,326이었으나 2003년에는 1,894,762건으로 10년 동안 44.7%의 증가율을 보여 전반적으로 양적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1> 한국의 총범죄 발생추이

(단위: 건)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전수	1,309,326	1,329,694	1,419,811	1,536,652	1,712,233	1,654,064	1,739,558	1,860,687	1,833,271	1,894,762

자료 : 경찰청(2004). 「경찰백서」.

총범죄를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나누어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특별법범은 전년에 비해 발생건수가 소폭 감소한 반면, 형법범은 발생 건수가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하여 전체 범죄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 년간 범죄발생의 양적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범죄발생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특히 형법범보다 특별법범의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특별법범이 계속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도시개발 등에 따른 도로교통법, 건축법 위반사례 등 사회구조의 다변화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반사회적 행동 등을 특별법으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2> 형법범죄 및 특별법범죄 발생추이

(단위:건)

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형법범죄	467,901	497,352	545,178	553,334	633,235	689,558	773,121	802,573	754,605	827,074
특별법범죄	841,425	832,342	874,633	983,318	1,078,998	964,506	966,437	1,058,114	1,078,666	1,067,688

자료 : 경찰청(2004). 「경찰백서」.

강력범죄 중 살인범죄는 4.3%로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강도는 23.5%로 다른 강력범죄보다 높은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강간 6.7%, 절도 5.0%, 폭력3.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범행수단 측면에서도 납치·인질강도, 특수강도의 빈발 등 점차 지능화·흉포화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3> 5대 범죄 발생현황

(단위:건)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계	264,708	258,348	275,058	294,569	330,304	383,976	520,763	532,243	475,367	497,066
살인	653	630	679	784	963	976	941	1,051	957	998
강도	4,580	3,674	3,670	4,420	5,516	4,972	5,416	5,692	5,904	7,292
강간	6,173	4,844	5,580	5,627	5,978	6,359	6,855	6,751	6,119	6,531
절도	60,255	62,710	70,238	83,063	91,438	89,395	173,876	180,704	178,457	187,352
폭력	193,047	186,490	194,891	200,675	226,409	282,274	333,630	338,045	283,930	294,893

자료 : 경찰청(2004). 「경찰백서」.

2003년 검거된 범죄자의 63.9%는 재범자로서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가 19.7%로 나타났다.

중요범죄의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방화 74.0%, 살인 70.4%, 강도69.9% 등 강력범죄의 재범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강력범의 경우 교화·갱생의 효과가 충분하지 못한 요인도 있지만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수용이 어렵고 이로 인해 범죄자가 새로운 환경에 전전한 방향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재범의 주된 원인이며, 또한 재범율은 계속적으로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4> 재범현황

(단위:명)

구분	총검거인원	재범자		
		소계	동종재범	이종재범
계	1,917,210	1,224,695	378,441	846,254
형법범	866,873	578,795	169,107	409,688
특별법범	1,050,337	645,900	209,334	436,566

자료 : 경찰청(2004). 「경찰백서」.

<표 II-5> 중요범죄의 재범현황

(단위:명)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재범자	337,540	764	4,873	3,664	1,048	32,980	294,211

자료 : 경찰청(2004). 『경찰백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치안여건의 변화에 따라 치안수요의 양적증대는 장기간의 경기침체, 청년실업률 증가, 신용불량자의 양상, 이기주의 팽배에 따른 국민욕구 증대, 점차 지능화, 국제화, 흥포화 되어가는 범죄 현상, 재범죄 등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같은 과정을 이미 겪은 선진국에서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경찰력을 증강, 장비의 현대화, 경찰인력의 전문화 등으로 인하여 범죄를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오히려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여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만 높아졌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범죄에 대응하는 총체적 범죄예방제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범죄예방제도의 필요성을 미국은 1900년초, 일본은 1960년 초에 각각 인식하고 민간경비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공경비인 경찰력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여 왔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범죄대응은 공경비인 경찰이 담당하고 범죄예방과 같은 예방적 임무는 민간경비가 맡아 수행하고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등과 같은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총체적 치안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III장에서는 선진국의 민간경비 실태와 전망을 살펴보고 제IV장에서는 이와 같은 실태 및 전망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한국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각국의 민간경비의 실태와 전망

1. 미국

1) 민간경비업의 발전과 실태

19세기 중엽부터 미국에서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민간경비는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경비분야는 국가 공경비기관인 경찰기관과 마찬가지로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데 광범위하게 이바지하여 왔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개인을 위한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한 보호는 일반적으로 민간 경비의 임무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민간경비의 발전은 남·북 전쟁과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단순한 인력경비에서 고도의 전자기술을 배경으로 한 기계 경비시스템을 갖추고 주요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을 보호하게 되었으며 현대에 와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정된 기업운영을 위하여 완전히 전문화·정보화된 민간경비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Gion Green,1981:18).

미국의 기계경비의 현황을 살펴보면 13,000여개의 경보기 및 Sensor 제조회사와 12,000여개의 특수열쇠 및 금고제작회사가 있으며, 기계경비와는 별도로 민간인 차원에서 범죄조사를 실시하여 주는 사설조사 기관만도 전국적으로 15,000여개에 70,000여명의 상근조사요원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William C. Cunningham and Clifford W Van Meter,1990:183-186).

2) 공경비와 민간경비와의 관계

미국의 경비 산업은 1940년대 이후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각기 회사들이 자신들의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개념을 지닌 경비 산업으로 발달시켜왔다. 특히 주목할 특징 중의 하나는 본격적으로 경비 산업이 발달하게 된 요인으로 범죄의 급속한 증가였다.

1972년 민간경비가 사회 안전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인식하고 법집행지원국(LEAA: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 산하에 민간경비 자문위원회(PSAC: Private Security Advisory Council)를 설치하였다. 1975년에는 형

사사법 기준과 목표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NACCJSG: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위원장이 PSTF(Private Security Task Force) 보고서 서문에 “이사회는 어떠한 형태로든 민간경비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언급 할 만큼 민간경비가 미국사회의 형사사법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경비원의 수는 2000년도 기준 약190만 명으로 70만 여명의 경찰정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계약경비업체는 2000년을 기준으로 92,300개, 자체경비업은 60,000개 업체로 집계되고 있다.

<표III-1>에서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민간경비와 경찰인력이 전체 210만 명으로서 미국 전체인구의 1%, 전체노동력의 약2%에 해당하며 연평균 2%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26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민간경비 단독으로 향후 10년 동안 2.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0년대 민간경비와 경찰의 예산은 820억불로 2000년대까지는 연평균 약 6% 증가하여 1,470억불로 성장하였다.

<표III-1>미국 민간경비와 경찰예산의 비교 및 전망

(단위: 억불)

연도	민간경비	경찰	총예산
1970	35	60	95
1980	200	140	340
1990	520	300	820
2000	1,030	440	1,470

자료: Charles R. Swanson, Leonard Territo & Robert W. Taylor, Police Administration, 4th(N.J: Prentice Hall,1998),pp.596-598. 이윤근, 요약집,p.4. 재인용

현재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관계는 범죄예방 활동을 위하여 긴밀한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찰이 민간경비회사에 부업을 실시할 만큼 상호간의 직위, 보수, 신분상의 커다란 차이를 느끼지 않으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2. 일본

1)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 실태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기획과에서 「2003년도 경비업의 개황」이 발표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2월말 현재, 경비업자 수는 9,231명으로 작년에 비해 322명이 주는 큰 감소를 보였다. 한편, 경비원수는 459,305명으로 작년 대비 22,495명이 크게 증가했다.

작년은 8년만에 형법 범죄의 인지 건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청소년 범죄의 흉악화, 재일 외국인에 의한 범죄, 조직범죄의 다발, 국제 테러의 위협 등으로 치안 정세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중에 경비업은 국민의 자주 방범 활동을 보완·대행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위치를 점하고, 사회 구조 속에 생활안전 산업으로서 정착하여 왔다.

경찰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안전·안심 지역 조성」 등 경비업에 의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항만 시설의 안전 강화, PFI 수법에 따른 신설형무소 정비, 위법 주차 단속의 만간 위탁 추진, 학교의 안전 대책 등의 분야에서 경비업의 공적 업무의 영역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고 매출 총액은 저년 대비 17.2% 증가한 3조2,222억4600만엔 달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2003년 경비업의 개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I-2> 일본 경비업체 수

(단위: 개)

년도	197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경비업체수	775	8,154	8,669	9,122	9,352	9,722	9,900	9,452	9,463	9,131

자료: 일본경찰청, 경찰백서 2003, 각년호.

경비업체 수는 <표 III-2>와 같이 2003년 12월말 현재 9,131명이다. 일본경비업법 시행 당시(1972년 11월)와 비교하면 11.8배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보다는 3.5%(332명)가 감소했다.

최근 5년 동안의 일본경비업체수의 현황을 보면 1999년 372명(4.0%)증가, 2000년 178명(1.8%)증가, 2001년 448명으로 4.5%가 감소, 2002년 11명(0.1%)감소, 1972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2001년에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표 III-3>일본 민간경비원 수

(단위: 명)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경비원 총수	406,109	422,851	446,703	436,810	459,305
상용경비원수	306,935	319,512	341,264	338,780	358,607
임시경비원수	99,174	103,339	105,439	98,030	100,698

자료: 일본경찰청, 경찰백서 2003, 각년호.

민간경비원총수는 <표III-3>에서와 같이 2003년 12월말 현재, 459,305명으로 전년보다 22,495명(5.1%)증가, 일본경비업법시행 당시(41,146명)에 비해서는 11.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원의 고용별 현황은 상용경비원은 358,607명으로 전년보다 19,827명(5.9%)증가했으며, 임시경비원의 수는 100,698명으로 전년보다 2,668명(2.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원 총수에서 임시경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1.9%로 드러났다.

2) 공경비와 민간경비와의 관계

<표I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현재 경찰관 수는 276,850명에 이르고 있으나, 민간경비원 수는 436,810명에 이르러 경찰인력을 훨씬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 일본의 경찰관수 · 예산 및 경비원의 증가 추이

(단위: 명)

연도	예산	경찰관수	경비원 수
1990	2조8379억6200만엔	258,345	231,200
1991	3조 82억3500만엔	258,948	263,210
1992	3조2059억1800만엔	259,205	291,320
1993	3조1505억7800만엔	258,876	321,721
1994	3조2121억8900만엔	259,098	342,357
1995	3조2962억3100만엔	258,624	358,415
1996	3조5123억8700만엔	262,439	377,140
1997	3조6581억 202만엔	263,123	392,624
1998	3조6897억9400만엔	263,483	401,011
1999	3조7698억4200만엔	267,599	406,109
2000	3조7637억9400만엔	269,910	422,851
2001	3조7103억8400만엔	274,317	446,703
2002	3조7412억5400만엔	276,850	436,810

자료: 일본경찰청, 경찰백서 2003, 각년호.

일본 민간경비 산업은 지난 40여년동안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면서 경찰과의 관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일본 경비산업은 경찰과 밀접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역단위 및 직장단위의 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양자간의 관계는 경찰이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표창 등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관계개선을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비업법은 1972.7.17에 제정되어 10년 후인 1982.7.16에 한차례 개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경비업법 제2조는 경비업을 상주경비, 교통유도경비, 귀중품운반경비, 경호경비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입법체계 및 조문의 문언은 우리의 경비업법이 일본 경비업법을 모델로 입법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법과 흡사하다.

3. 한국

1)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 실태

경비업법이 제정된 1976년 첫해 9개 업체, 5천여 명의 경비원에서 2005년 6월 말 현재 2,418개 업체, 117,668명의 경비원으로 증가하였다. 제도시행 28년 동안 업체 수에서는 약260배의 성장과 경비원의 수는 약23배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표III-5>에

서 나타났다.

<표 III-5> 한국민간경비업체 및 경비원의 연도별 증가현황

(단위 : 명/개)

연도	1976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비원수	5,022	70,268	75,090	81,618	84,805	107,963	109,200	105,697	117,668
경비업체수	9	1,375	1,707	1,882	1,929	2,051	2,163	2,322	2,418

자료 : 한국경비협회, 2005.

위의 <표III-5>에서 나타났듯이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질적인 면에서도 과거 사람 위주의 단순경비에서 첨단장비 및 기술을 활용한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따라 이러한 성장추세는 계속 이어질것으로 전망되고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경비영역 확대를 통해 민간경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6> 한국민간경비업체의 허가업종별 현황

(단위 : 개)

경비형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업종계	법인수
경비업체수 (지수 %)	2,290	42	301	141	36	2,810	2,418

자료 : 경찰청, 2005.

-법인수는 2,418개사이지만 1개사가 2개이상 겸업으로 인하여 2,810개사로 수가 늘어남

<표 III-7> 한국 경찰인력 및 예산의 변화추이

(단위 : 명/개)

구 분	1991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	2003
경찰인력(명)	84,931 (1.0%)	89,629 (5.5%)	90,515 (6.6%)	90,623 (6.7%)	90,670 (6.8%)	90,819 (6.8%)	91,592 (7.7%)	92,165 (8.4%)
1인당 담당 인구(명)	516	524	516	518	522	526	527	523
예 산	경찰예산 (증가율%)	1조7,643 (23.4)	3조6,078 (12.7)	3조4,833 (3.4)	3조4,754 (0.2)	3조6,744 (5.7)	4조3,847 (19.3)	4조9,279 (12.4)
	정부예산 (증가율%)	31조3,823 (27.2)	67조5,786 (16.6)	75조5,800 (11.9)	83조6,852 (10.7)	86조4740 (3.3)	94조1246 (6.1)	109조6,297 (16.5)
	경찰예산 / 정부예산	5.6%	5.0%	4.3%	4.0%	4.2%	4.6%	4.5%

자료 : 경찰청(2003). 「경찰백서」.

경찰예산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수행하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중에서 국민의 안전한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치안활동 예산이라는 점에서 어느 행정서비스 예산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국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찰예산이 지속적인 투자가 요청되고 있다. 경비업체와 경비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경찰력의 증가와 경찰예산의 증가는 국가재정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 공경비와 민간경비와의 관계

(1) 민간경비발전협의회 운영

한국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의 끊임없는 상호협력과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거듭 주장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러한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의 지속적인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의기구로 현재 한국경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경비발전협의회를 들 수 있다. 민간경비발전협의회는 한국경비협회 연구자문위원장이 의장으로 경찰, 경비협회, 업계, 학계 관계자가 참여하여 1년에 3차례 이상 정기 회의를 통해 민간경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기구로써, 최근 경비업법 개정 등과 같이 민간경비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적 토대가 되는 개선안을 강구해왔다.

현재로써는 이러한 민·경 협력기구가 한국경비협회에서만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별 민간경비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생활안전계 설치

경찰청은 최근 생활안전과 내 생활안전계를 설치함으로써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오던 민간경비업체와 경찰간의 상호협력활동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생활안전계는 민간경비업체의 허가 및 등록 외에도 경비원 교육 위한 자격증제도 실시, 경비업법 개정안 마련,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사업 위탁,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사업 위탁 등 민간경비 산업 발전에 있어서 법·제도적인 환경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러한 민간경비 전담기구의 설치는 그동안 민간경비 산업이 일반 개인 업체와는 달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일선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하겠다.

(3) 특수경비원 제도의 도입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개정 법률안이 2001년 통과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경찰과 함께 민간경비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특수경비제도는 첨단 기계경비시스템과 연계된 종합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의 각종 중요기관, 산업발전시설, 방송사, 교통시설, 항만, 수원지, 교도소,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각종 보안시설 및 유수의 금융권 등을 경비하는 실로 막중한 임무를 말한다.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간첩·대테러 상황시 국가중요시설의 완벽한 방호를 위하여 청원경찰처럼 민간인 신분의 특수경비원에게 제한적으로 총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그동안 민간경비원의 총기 휴대에 관한 논란을 종결시키고 민간경비 산업에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IV.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협력증대 방안

1. 민간경비 전담기구승격

공경비와 민간경비와의 효율적인 범죄예방협력증대방안을 구축하고 민간경비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간경비 전담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민간경비의 중요한 정책사항은 국가가공안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각 주별로 규제위원회(Regulatory Board)가 있어서 민간경비의 중요한 정책사항들로 결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그동안 민간경비업체가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었고 기타 제반사항들이 국가 차원에서 처리하여야 할 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경찰청 생활안전계에서 전반적으로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2005년 6월 현재 경비원의 수가 약 12만 명에 이르고 경비업체 수가 2,418개로 늘어난 이 시점에서 경찰청 생

활안전계에서 1명의 인적자원으로써는 급속도록 성장하는 민간경비업계의 효율적인 통제가 매우 힘들 것이다. 경비시장의 확대에 따른 적절하고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경찰청 내에 민간경비 담당하는 부서를 계에서 과로 승격하고 인적자원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역할 기준 재정립

민간경비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과거 경찰이 수행해 왔던 치안업무의 많은 부분을 이미 민간경비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과거 국가의 고유기능으로만 여겼던 치안유지가 민간으로 이양되어 가는 현대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제 민간경비체제는 공경비의 보조내지 보완적 역할을 넘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동안 경찰위주의 모든 정책을 민간이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경찰과 민간경비업체간의 불신과 마찰을 해소하고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호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지금까지의 방범정책을 고쳐서 민간경비에 위탁 가능한 것은 위탁하고 본래 민간경비에서 실시해야 할 것은 민간경비에서 실시하는 등 민간경비와 경찰의 역할을 재조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주 방범활동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3.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의식 전환

경찰은 지금까지 경찰 단독을 떠맡아 왔던 치안서비스를 민간경비업과 함께 나누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간경비업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식이 필요하고, 민간경비는 단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인 직업이 아니라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통해 민간경비업의 전문성을 살리며 공익업무 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경찰력과 민간경비 인력이 적절히 조화되어 사회 안전망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경비의 급속한 발달로 시설경비, 행사경비, 신변경호 등은 민간경비업계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치안수요의 다양성과 전문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치안서비스 공공생산의 동반자로 민간경비를 인정하고 양자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에 도움이 되고 또 양자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이상원, 2003: 67-101).

4. 합동순찰제도 도입

범죄예방 활동과 시민의 생명·신체 그리고 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동순찰제도를 행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민간경비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치안확보를 위한 양조직의 격차를 좁히기 위하여 경찰과 민간경비 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와 같은 합동순찰제를 실시하고 있다(이윤근, 2000: 33).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장차 경찰과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와 같은 합동순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김순열, 2003: 107-142). 합동순찰제도는 양 조직의 실질적인 협력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관할지역 내에서 업무의 이해와 능률을 증진시키고 경비인력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5. 인사상 상호교류관계

민간경비업이 빌달한 선진국의 경우 경찰관의 민간경비업으로의 진출이 현저하다. 그 중에서도 퇴직 경찰관이 경비업체 재취직을 하는 경우는 혼한 일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미약하게나마 재취직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각 기업으로서는 이들이 이미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그 만큼 편리한 것이다.

또한 민간경비업체에서 다년간 근무경험을 가진 전문요원으로서 경찰에 투신하는 것도 경찰전문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경찰과 민간경비는 상호간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도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6. 경비업 협력위원회 설치

일선경찰과 경비업자 상호간의 원활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지방 단위의 상설 「경비업협력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함으로서 상호의견·정보의 교환, 업무추진상의 협조에 관한 토론 등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이 범죄활동이 경찰조직 위주로 국가정책이 확립되어 왔기 때문에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조체제 구축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법집행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국가공권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사회 및 국민의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과중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의 증가에 경찰력은 인력, 장비 및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간경비는 치안의 공동화를 보완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국민의 민간경비에 대한 낮은 인식과 경찰의 민간경비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민간경비와 관련된 범죄예방정책의 미흡, 경비업체의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범죄대응은 단순히 경찰 자체의 업무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민간경비를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민간경비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간경비는 단순히 영리사업이 아니라 특별한 사회적 역할을 가진 공공성이 강한 안전보장산업이다. 시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에 직접 기여하고 있는 점에서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민간방범 시스템이 일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로 설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호협력의 증진은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효율적 방범활동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구축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

위상징상의 문제나 역할상의 문제, 기본적인 방범활동이나 경비상에서 오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양조직간의 별다른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상호협력증대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경비 전담기구승격 방안

둘째,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역할 기준 재정립방안

셋째,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의식 전환방안

넷째, 합동순찰제도 도입방안

다섯째, 인사상 상호교류 관계방안

여섯째, 경비업협력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민간경비도 경찰과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경비인력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 경비업종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비산업이 국가와 사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식수준을 변화시켜야 한다.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강화는 국민들이 원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시키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경찰청(2003). 「경찰백서」 .
- _____.(2004). 「경찰백서」 .
- 김두현, 김정현(2002). 「민간경비론」 .백산출판사.
- 김상균(2004).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을 통한 협력증진방안". 「경호경비연구」 , 7:433-461.
- 김순열(2000). 「경호경비안전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pp.107-142.
- 김충남(2001). 「경찰학개론」 . 서울. 박영사.
- 백봉현(2002). 「한국 민간경호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pp.151-152.
- 이상원(2003).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협력방법체계 구축방안". 「경호경비연구」 , 6:67-101.
- 이윤근(1994). "2000년대 민간경비의 전망과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
대학교 동국논총」 제33집.
- _____(2001). "민간경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경비협회.
- _____(2002) . "한국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창립학술세미나.
- 정진환(2001). "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제3회 정기학술
세미나, pp.87.
- Bayley, D(1994). Police for the Futur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Burstein, Harvey(1994), Introduction To Security, New Jersey, Prentice Hall Career & Technology
- Fenelly, Lawrence J.(1992). Security Applications in Industry and Institutions.
- Butterworth: Heinemann..pp.65.
- Gion Green. Introduction to Security(Boston: Butterworth. 1981).p.18
- National Advisory Commiss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 and Goals. Report on the
Police(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973)
- Robert, J., & Fische(1981). Security Education: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Journal of
Security Administration(No.1),pp.59.
- William C. Cunningham and Clifford W. Van Meter, The Hallcrest Report Report II : Private
Security Trends 1970 to 2000. MA: Butter Worth-Heinemann. 1990.

ABSTRACT

A Study on Collaboration between the Public Law Enforcement and Private Security Sector for the Activation of Security

LIM, MYEONG SOON

The Chief of Education Training Department, Dr. in Admin Sc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lve into all sorts of literature concerned in a bid to suggest how the Public Law Enforcement and private Security sector could join forces in preventing crimes and guaranteeing the safety of people.

Quite naturally, crime has increased greatly to become one of the major social problems.

Crime has been conventionally recognized as "something" to be prevented and controlled by public law enforcement. However, the rate of crime increase has been so rapid that public law enforcement alone could not effectively control the everincreasing and diversified crimes in our society.

To serve as a qualified partner for the police, private security industry should strive to secure excellent manpower and provide education for workers to improve their qualifications. Specifically, they should put sustained efforts into diversifying the types of security business and creating a new market to extend their scope of business and become more competitive. Intensified collaboration between the Public Law Enforcement and private Security security sector is expected to create new synergy in addressing people's needs for safety and enhancing their quality of life.

[Key Words : activation, Public Law Enforcement, private Security, security industry, police]